

개정안

제1장 총칙

제 1-1 조 【명칭】 본 규정은 함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 1-2 조 【목적】 본 규정은 함현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3 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1-4 조 【정의】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1-5 조 【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2-1 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 3-1 조 【조언】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3-2 조 【상담】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②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③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종단할 수 있다.
9.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3 조 【주의】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마.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3-4 조 【훈육】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④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내외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 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 할 경우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 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및 교장실 등 지정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교무실 및 교장실 등 지정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 (가용인원-교무실 직원 및 안전지킴이등) 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등 지정 장소로 이동 *인계시 학생정보 등 학부모 연락처 공유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학부모에게 분리사실 통지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학부모에게 분리사실 통지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명확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内外)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 : 수업 시작 후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교실, 과학실, 강당, 체육관 등)에 입실하여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①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③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④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나 1일후 되돌려줌 <p>※ 담임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보관하고, 물품보관 일지를 작성하여 자율 관리함</p>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p>※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p>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3.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3-5조 【훈계】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1조에 따른 조언, 제3-2조에 따른 상담, 제3-3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4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 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①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② 성찰하는 글쓰기
 - ③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3-6 조 【보상】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3-7 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3-9 조 【기타 사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4-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이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만 18세 이상 학생의 피선거권 제한 및 선거 운동 등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선거 운동 및 흥보에 대한 제한은 4-29조 학생자치회의 게시물 판단(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준하여 결정한다.
-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4-2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3조(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언어폭력
5.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4-4조(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았을 경우나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교사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힐 수 있다.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학교(담임 등)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4-5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1.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6조(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흥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7. 학생생활지도(흡연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8.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9. 소지품 검사 시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10.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4-7조(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휴식을 취할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0조(다양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동의 재능, 특기, 소질을 신장하고 바른 인성을 지니도록 선도함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 활동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포상으로 아동의 특성, 개성 소질이 존중되도록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4-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1. [용의복장]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 가. 복장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나.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용도에 맞는 것으로 착용한다.
 - 라. 가방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안전을 고려한다.
 - 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4-12조(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은 제한할 수 있다.
2.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및 입문기 아동인 1~2학년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5. 학교는 타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13조(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자유)

학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제4-14조(휴대전화 사용 교육 및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1. 학교 등교 시 교문입구에서 전원을 끄고, 하교 시 교문 밖에서 전원을 켜도록 하며,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단, 학급 재량으로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등교 시 일체 보관 후 하교 시 돌려 줄 수 있다.)
2. 휴대 전화 사용이 꼭 필요할 경우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3. 위의 규칙을 어길 시 담임교사 또는 전담교사가 보관 후 당일 하교 시에 되돌려 줄 수 있다.

제4-15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6조(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17조(건전한 사이버생활을 누릴 권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4-18조(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9조(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

- 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6.(신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4-20조 (명칭) 이 회는 함현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4-21조 (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제4-22조 (학생자치회 조직 · 운영)

1.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2.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4-23조 (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고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5. 학교 규정의 제·개정
6. 학교 정책결정 참여 논의

제4-24조 (부서)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인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25조 (학급자치회 직무 및 선출)

1.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총괄하고 학급자치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 ③ 학생들은 학생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제4-26조(학생자치회 직무 및 선출) 학생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1.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총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본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 ②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27조(대의원회)

- 1. 대의원회는 학생회장(부회장), 학급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은 의장이 된다.
- 2. 학생자치회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 3.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제4-28조(자치활동의 권리)

-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학생의 의견 공유와 학생자치회 활동을 위하여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한다.
- 4.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회실을 갖추도록 하며, 학생 자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4-29조(선출)

- 1. 전교 및 학급학생자치회 임원선출은 본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30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1.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3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32조(보호자의 의무)

1.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가 준비물 전달, 하교보호, 기타 상담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들러 방문증을 패용하고 교실에 입실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4-33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4.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4-34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5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1.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3.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36조(급식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7조(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2.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4-38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9조 (학생생활교육)

1. 학생생활교육 지도는 학생을 통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제9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40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학생생활교육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둈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관련부장, 학년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로 구성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시상에 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일시, 장소, 개최이유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4.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신청 절차를 포함한다.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 자세한 사항은 함현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0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4-41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4-42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학교와 학교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학교와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함현초등학교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안)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안을 통합

제1절 총칙

제5-1조(명칭) 이 규정은 ‘함현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5-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5-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증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6.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5-7조(구성 및 직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가.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기타위원 등)

라.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3.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8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학생 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9조(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3.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6.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10조(회의소집)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위원회 개최 통지시 일시, 장소, 개최 이유를 포함하여 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제5-1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안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선도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사안의 선도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도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5-12조(비밀의 범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 학생의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선도 학생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5-13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5-15조(징계 전까지 단계별 과정)

1. 경고 (1단계-1호 지도)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 교실 안 지도 및 상담 (2단계-2호 지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2차 경고 및 학부모상담 안내를 실시한다.

3. 학부모 상담 (3단계-3,4호 지도)

담임교사의 지시 불이행 및 교실 안, 지도만으로 행동수정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내교 및 면담을 요청하여 상담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위급시 바로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 상담교사 상담 (4단계-3,4호 지도)[상담교사의 연계 상담이 불가능할 시 상담 업무담당자가 대처 방안을 강구함]

교실 내에서 수업 방해 및 교사의 지도 불응으로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 교실 밖으로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상담실로 이동시켜 상담교실 담당자가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5.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5단계-3,4호 지도)

학부모 상담, 상담교사 상담 실시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담임교사나 생활관련부장의 판단으로 5단계 생략 후, 6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6. 징계 (6단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함현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5-16조(징계 전까지 단계별 대응)

1. 1단계 : 훈계 (구두주의 및 격리조치-1,2호 지도)

수업 시 문제행동을 할 경우 교사는 생활지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실 뒤에 나가서 서있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공부하기'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고 문제행동 원인에 대해 학생과 상담한다.

2. 2단계 : 재발방지 및 과제부과를 부과한다.(3,4호 지도)

가. 학급 내 봉사활동 이행하기

나. 자기행동이행계획서(행동성찰문) 쓰고 부모님 확인 및 지도 내용 받아 오기

3. 3단계 :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3,4호 지도)

학생의 문제행동이 반복될 시 전화상담, 서면상담, 대면상담 중 선택하여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상담일지를 기록한다.

4. 4단계 : 담임교사의 지도와 학부모 상담으로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함현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내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 이수

라. 출석정지

제5-17조(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5.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종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18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 봉사

가. 하루 2시간内外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라. 학교 내 봉사의 예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5)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반성문, 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2. 사회봉사

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의 목표로 하는 기관

②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사회봉사 기관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학교 내 봉사로 대체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

- 가. 관련 교육 기간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30시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사.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판단하여 학부모의 동의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차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종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돋운다.
- 라.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마.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돋운다.

3. 선도 및 징계처분

선도 및 징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19조(선도사항)

학생선도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 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8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5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6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
17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18	교내 · 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0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2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4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	○	○	○
25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6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5-20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21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2조(재심의 절차)

1. 학교장은 제19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21조 내지 제5-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23조(재심청구)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24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5-25조(사안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26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

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지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제5-27조(선도 내용의 통지)

-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은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28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29조(결과 처리·열람)

- 학생생활지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절 규정의 개정

제5-30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6-1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홍보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홍보)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1.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4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1.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교원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5조(보호자 교육)

1.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6-6조(인권실태조사)

학교장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7조(실천계획의 작성)

1.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8조(학생참여)

학교장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9조(지침 이행)

학교장은 교육감이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0조(주민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7-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1.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장 제44조에 의한다.

제8장 교권보호

제8-1조(교권보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9장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9-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9-3조(개정원칙)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9-4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1.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3.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고, 교원 대표는 업무의 순환을 고려하여 1년을 임기로 하며 학생 대표는 학생자치회의 의견 수합을 위하여 학기를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는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

를 반영한다.

7. 제·개정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구성 방법)

- ①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학생위원은 위원회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③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마.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요청
2.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한 학생회 의결)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보호자의 1/3 이상의 요청 또는 학부모회 회원의 1/3 이상 요청에 의한 의결)
4. 학교장의 요청
5.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제9-8조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한다.
2. 의견수렴 과정은 학생은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등),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교직원은 설문조사나 교직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제9-9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및 심의 시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10조(교육과 연수)

1. 학교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사실을 학교 누리집과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한다.

제9-11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9-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9-13조(개정절차)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14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